

1. 개정이유

정부조직법(법률 제21065호, 2025. 10. 1. 공포, 2026. 10. 2. 시행) 및
공소청법(법률 제21490호, 2026. 3. 24. 공포, 2026. 10. 2. 시행)이
제·개정됨에 따라, 사면심사위원회의 세부 규정을 정비하여 사면 업
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공소청법 등 제·개정 및 법무부 직제 개정으로 사면심사위원회의
위원 명칭 정비(안 제3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정부조직법, 공소청법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법무부령 제 호

사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사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검찰국장”을 “형사사법국장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대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위원의 임명 및 위촉) 위원 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 나 위촉한다.	제3조(위원의 임명 및 위촉) ---- ----- ----- -----.
1. 법무부차관, 법무부 기획조정 실장 · 법무실장 · <u>검찰국장</u> · 범 죄예방정책국장 · 교정본부장 · 감찰관, <u>대검찰청</u> 기획조정부장 · 공판송무부장.	1.----- ----- <u>형사사법국장</u> --- ----- --- <u>공소청</u> ----- -----.
2.(생 략)	2.(현행과 같음)